

선행학습경험인정에 관한 규정

2021.05.13.제정 2021.06.01.일부개정 2023.02.25.일부개정

<학사관리팀>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학칙 제38조 제5항내지 제6항에 의거 선행학습경험인정에 관한 절차와 범위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행학습경험이란 학칙 제38조 제5항에 의거 개인이 국내외 다른 학교,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 및 근무를 통해 학습이 발생한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.
2. 선행학습경험인정(RPL: Recogni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, 이하 'RPL'이라 한다.)이란 다양한 형태의 선행학습경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및 범위) ① **삭제(2023.02.25.)**

- ② RPL은 각 학과 전공에 적합한 교육 및 학습, 훈련, 경험에 한하여 최대 **총 10학점**까지 가능하며, 인정기간 및 자격종별 등에 따른 인정학점은 따로 정한다. (**개정 2023.02.25.**)
- ③ RPL은 동일한 학습경험, 자격취득, 직무경험 등에 대하여 중복인정하지 않는다.

제4조(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) ① RPL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1.6.1.)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과 학사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1.6.1.)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1. 학과 학습인정심의위원회의 RPL평가 결과 및 증빙자료 적합성 심의
 2. 기타 RPL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

제5조(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) ①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를 수행할 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둔다.

- ② 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③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학과 RPL평가계획 도구 및 기준 개발
 - 2. 학과 RPL평가운영
- ⑤ 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.
 - 1. 학과학점인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.
 - 2.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 합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학과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평가자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학점인정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.
 - 3. 평가위원은 RPL평가서 작성 시 학점인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, 평가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청 및 절차) ① RPL 신청은 입학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입학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학과로 제출한다.

② 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는 신청 학생에 대한 RPL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 및 학생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한다. (개정 2021.6.1.)

③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는 RPL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 적합성을 심의 후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다.

④ 학사관리팀은 RPL심의 결과를 학점에 반영하고 해당 학과로 통보한다. (개정 2021.6.1.)

제7조(학점 및 성적부여) RPL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된 전공으로 학점을 인정하거나, 'RPL'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성적은 Pass로 부여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